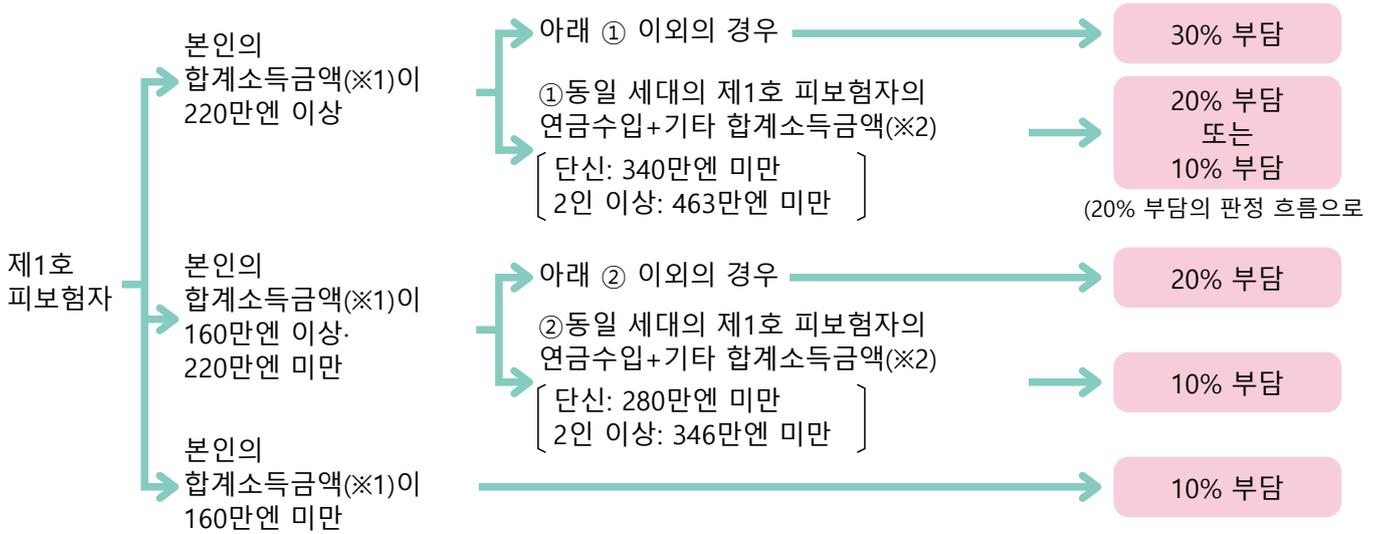


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

-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소득 등에 따라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90%~70%가 개호보험에서 지급되며, 나머지 10%~30%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(아래 그림 참조). 단, 거택개호지원, 개호예방지원에는 이용자 부담이 없습니다.



※ 1 : 합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8 페이지 ※ 2 (1) (2) 참조 .

※ 2 : 기타 합계소득금액이란, 합계소득금액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(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) 을 공제한 금액 .

※ 3 : 제 2 호 피보험자, 주민세 비과세인 분, 생활보호수급자는 위와 관계없이 10% 부담 .

재택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지급한도기준액

- 재택서비스의 경우 요개호도별로 개호보험에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상한 (지급한도기준액) 이 정해져 있습니다 (오른쪽 표 참조) .

주 : 실제의 상한 (지급한도기준액) 은 단위 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. 1 단위당 단가는 지역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, 오른쪽 표에서는 기준으로서 1 단위당 10 엔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.

- 상한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상한 초과분 전액이 자기부담이 됩니다 .

요개호도	보험에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(1개월당·기준)
요지원 1	50,320 엔
요지원 2	105,310 엔
요개호 1	167,650 엔
요개호 2	197,050 엔
요개호 3	270,480 엔
요개호 4	309,380 엔
요개호 5	362,170 엔